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980 공갈, 공갈미수
2024초기580, 59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박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창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 22:54경 위 'E' 업소를 찾아 온 피해자 B의 영업 문의 전화를 받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내뱉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03경 대구 달서구 F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보자마자 "음주운전 했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자, 같은 날 23:04경 곧바로 'F' 모텔 주차장인데, 음주운전해서 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신고한 것을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위 112신고를 취소해주고,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2. 23: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3. 9. 27. 03:58경 대구 달서구 G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타페 차량을 발견한 후, 곧바로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위 쏘타페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위험하게 유턴을 합



니까? 혹시 음주운전한 것 아닌가요? 입 한 번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위 산타페 차량 앞에 피고인이 서있는 상태에서 위 산타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을 살짝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0. 19.경부터 10. 2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총 17번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만약 사장님이 편하신 대로 합의 보신다 하면 형벌은 조금 줄거예요.", "이게 음주운전 사건이 되게 크잖아요.", "음주 처음 아니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초보 아니시죠?", "요즘 음주운전이 솔직히 세잖아요. 이제 법도 더 세졌고, 사실 사장님이 사람을 쳤고요.", "저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박으면 인생이 좇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합의서 쓰고, 제가 진단서를 제출 안 할게요." (2023. 10. 19.경), "추가 합의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병원에 계속 가야 되니까, 내일 저녁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내가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 1,600까지는 받아야 될 거 같아요.", "400만 원까지 더 만들어 주시면 제가 내일 오후 즈음 사장님 만나고, 경찰관 조사 받으러 가서 이제 종결시키겠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사장님은 처벌이 크죠.", "만약 제가 이제 진단을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구속일 가능성이 거의 많이 높고요.", "한의사 선생님이 저희 삼촌이에요.", "사장님 벌금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사장님이 유치장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몇 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1년 반이 나올지 7개월이 될지 8개월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선 그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사건 무마시킵시



다."(2023. 10. 23.경)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해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가중처벌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20. 09:5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1:5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T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귀금속 대금 1,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2023. 10. 23. 23:29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8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진짜 큰일, 이게 진짜 크네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이게 약식 기소로 안 넘어가고 그냥 다이렉트로 재판을 본다 하더라고요.", "이거 징역형 들어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대요. 왜냐하면 투아웃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힘 좀 써드릴까요? 경찰이 얘기하는게 바로 그냥 형으로 들어간대요. 검찰로 들어가면 이제 재판에 바로 다이렉트, 지금 엄청 강화됐대요.", "한 1,900까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해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가중처벌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2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제1항에 기재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공갈하여 합계 17,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를 공갈하여 4,2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내용 24부

1. 계좌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갈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1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재산을 갈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 사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용서를 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이 경제적 타산에 따라 범한 범죄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산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윤제 _____